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법률 제1708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시·군·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제10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제11조제1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그 소속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제12조의 제목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피해아동”을 각각 “피해아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피해아동”을 각각 “피해아동등”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를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변호사”를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로, “보고”를 “통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피해아동”을 각각 “피해아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피해아동”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아동권리보장원의 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를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를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아동 소유”를 “피해아동등이 소유한”으로, “피해아동의”를 “피해아동등의”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본문 중 “변호사”를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검사”를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을 “보호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보조인”을 “보조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관찰관”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호관찰관”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있다”를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변호사”를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을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로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를 “법무부장관 등 관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를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제3항”으로,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특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4항 후단 중 경찰관서의 장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송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47조, 제50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 ◇개정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 등).

나.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제12조, 제13조 등).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총 기간의 상한을 4년으로 하던 것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함(제51조).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에 필요한 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제55조).

마.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